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19

대 전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1281 종합합산재산세과세대상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20. 9. 10.

판 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4. 원고에게 한 종합합산재산세 과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19

가. 원고는 2018. 6. 1. [redacted]시 B 답 1,002㎡ 중 941㎡(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와 [redacted]시 C 답 321㎡(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redacted]시 B 답 2,588㎡(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2005. 4. 25. [redacted]시 B 답 1,002㎡(그 중 961㎡가 이 사건 제1 토지이다), [redacted]시 D 답 1,265㎡, 이 사건 제2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2018. 9. 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 19,523,160원(종합합산과세 5,104,955원 + 별도합산과세 7,635,667원 + 분리과세 195,811원 + 도시지역 3,999,454원 + 지방교육세 2,587,2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11.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1. 23. 불복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피고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원고는 2019. 4. 11.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8.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19

1) 원고는 2005. 9.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허가를 받아 2007. 9. 12. 착공하였고 2019. 7. 23.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위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 지방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에 따라 이 사건 제1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2) [redacted]시 B 1,002㎡ 중 61㎡에는 건축물이 존재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위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설령 이 사건 제1 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E이 이 사건 제1 토지를 임차하여 업무용이나 경제활동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1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제2 토지 부분은 1998. 2. 9. 충청남도 고시 F에 의하여 용도지구가 도로로 지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위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토지를 분할하였는데, 2016. 6. 13. [redacted]시 고시 G로 [redacted]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로 이 사건 제2 토지가 도로 용도지구에서 해제된바, 분할의 경위 및 용도지구의 변경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 토지는 [redacted]시 B 및 [redacted]시 D, H 토지에 소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

3. 관련 법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19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목)'와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나.목)'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구체화하여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는 '건축 중인 건축물은 구 지방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이 사건 제1 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2005. 9. 22. 피고의 신축공사허가가 있었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19

2007. 9. 12. 착공하였으며, 2019. 7. 23.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제1 토지에 과세기준일인 2018. 6. 1.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 중인 건축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제1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E에게 2015. 12. 12. 토지 인도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E이 이를 인도하지 않아 2018. 9. 17. 다시 E에게 이 사건 제1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② 원고가 E에게 보낸 2018. 9. 17.자 내용증명에는 이 사건 제1 토지를 명도받는 즉시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당시까지 이 사건 제1 토지는 나대지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건축물 신축공사가 중단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이 사건 제1 토지를 포함한 [redacted]시 B 답 1,002㎡에는 연면적 61.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위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위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2,993,900원이고 [redacted]시 B 답 1,002㎡의 2018년도 과세표준액은 703,504,200원이어서 위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이와 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19

은 점을 고려하여, [redacted]시 B 답 1,002㎡ 중 위 건축물의 바닥면적인 61㎡를 제외한 이 사건 제1 토지 부분만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주장과 같이 E이 이 사건 제1 토지를 임차하여 업무용이나 경제활동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 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판단

갑 제12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토지에는 아무런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는 반면, E의 I는 [redacted]시 H 지상에 위치한 점이 확인된다. 설령 [redacted]시 B, D, H 토지에 건축물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토지는 이 사건 제2 토지와 구분되는 별개의 토지이므로, 이 사건 제2 토지에 아무런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2 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19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19

별지

관련 법령

❑ 구 지방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19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19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 · 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기준에 맞는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4.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5.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장용,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만 해당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6.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19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및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대행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8.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설치·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19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안의 토지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한다.
14.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자 연구 및 생산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
15.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자,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16. 「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를 보관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토지
17.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 중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